

‘97.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 심사보고서

1997. 7. 7.

중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7월 1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7년 7월 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4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 ('97. 7. 7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조 병 하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'97년도에 이루어질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의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개정골자

- 아래 재산을 아현2동 신청사 및 연남동 신청사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'97년도 하반기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
 - 아현2동 신청사 (건물 및 부지)
 - 아현동 338-27 대지 330.6㎡, 건물 956.17㎡
 - 연남동 신청사 건립부지
 - 연남동 515-24, -25 대지 531.5㎡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 관 수)

- 동 건물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편성하여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.

○ 동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아현2동 신청사 예정부지는 아현동338-27호상 대지 330.6㎡, 약 100평과 건물 956.17㎡, 연면적 약 290평의 지하1층, 지상5층의 건물이고, 연남동 신청사 건립예정부지는 연남동 515-24, 25호상 대지 531.5㎡, 약 161평을 97년도 하반기에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동청사 예정부지의 위치는 현 청사와 비교할 때 비교적 동네 중심부에 위치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요지(정만직 위원) : 아현3동, 신공덕동 신청사 건립계획은 없는 가?
- 답변요지(홍 기 총무과장) : 현 아현3동 청사는 회의실 조차 없는 등 협소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인근지역의 개인주택을 매입하여 금년 7월에 착공, 연말에 완공해서 지하1층, 지상1,2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, 3층은 동민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이며, 신공덕동은 재개발구역내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임
- 질의요지(정만직 위원) : 아현2동 신청사 규모를 보면 지하 1층, 지상5층으로 계획되었는데 동청사를 굳이 크게 신축할 필요가 있는가?
- 답변요지(홍 기 총무과장) : 합리적인 사고로 검토하겠음.
- 질의요지(이진표 위원) : 관공사에 있어서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?
- 답변요지(홍 기 총무과장) :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음.
- 질의요지(유남렬 위원) : 신수동 청사도 이미 빗물이 새는 등의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?
- 답변요지(홍 기 총무과장) : 신청사 건립시 감리를 철저히 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 안 의 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공공기관 공사시에 감리를 감리자에게 일임하지 말고 해당 동장, 건축과 담당공무원, 지역 구의원등이 감리토록 하는 방안 강구

'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(안)

의안 번호	195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'97. 6.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'97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동 청사의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아래 재산을 아현2동 신 청사 및 연남동 신 청사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'97년도 하반기에 취득코자 하는 것임.
 - 아현2동 신 청사 (건물 및 부지)
아현동 338-27 대지330.6㎡, 건물956.17㎡
 - 연남동 신 청사 건립부지
연남동 515-24, -25 대지531.5㎡

3. 근 거

- 지방자치법(1995.12.29 법률 제5,069호) 제35조 제1항 제6호
- 지방재정법(1995. 1. 5. 법률 제4,868호) 제77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(1996. 6.29 대통령령 제15,093호) 제84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(1995. 3.25 조례 제287호) 제36조, 제37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(1994. 9.15 규칙 제186호) 제29조

첨부 : 공유재산관리계획 1부.

구유재산관리계획

'9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(6-1)

회계명: 일반회계

(2 - 1)

(단위: ㎡, 천원)

구	분	상			기			하			반			기			합			계	비고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		
취	계	토지	1	399.5	840,000	3	12,840.1	3,597,500	4	13,239.6	4,437,500											
		건물				1	956.17	750,000	1	956.17	750,000											
		기타																				
1.매	입	토지	1	399.5	840,000	3	12,840.1	3,597,500	4	13,239.6	4,437,500											
		건물				1	956.17	750,000	1	956.17	750,000											
		기타																				
2.교환으로	취	토지																				
		건물																				
		기타																				
3.기타취득	취득	토지																				
		건물																				
		기타																				

구유재산관리계획

('97년도 추가분)

회계명: 일반회계

(2 - 1)

(단위: ㎡, 천원)

구	부	상			기			기			합			비고
		반		액	반		액	하		액	수		액	
		수	량	금	건수	수	량	금	건수	수	량	금	수	
취	계	토지			2	862.1	2,057,500	2	862.1	2,057,500	2	862.1	2,057,500	
		건물			1	956.17	750,000	1	956.17	750,000	1	956.17	750,000	
		기타												
취	1.매입	토지			2	862.1	2,057,500	2	862.1	2,057,500	2	862.1	2,057,500	
		건물			1	956.17	750,000	1	956.17	750,000	1	956.17	750,000	
		기타												
취	2.교환으로	토지												
		건물												
		기타												
취	3.기타취득	토지												
		건물												
		기타												

(단위: m, 천원)

(2-2)

구	분	상			기			기			합			비 고	
		건수	량	금	건수	량	금	건수	량	금	건수	량	금		액
제	토지			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			
	기타														
1.매 각	토지			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			
	기타														
2.양 여	토지			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			
	기타														
3.교환으로	토지			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			
	기타														
처 분	계														
	토지			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			
사용 및 대 부	계														
	토지			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			
허 가	계														
	토지														
	건물														

'97년도취득대상재산목록(6-2)

('97년도 추가분)

회계명: 일반회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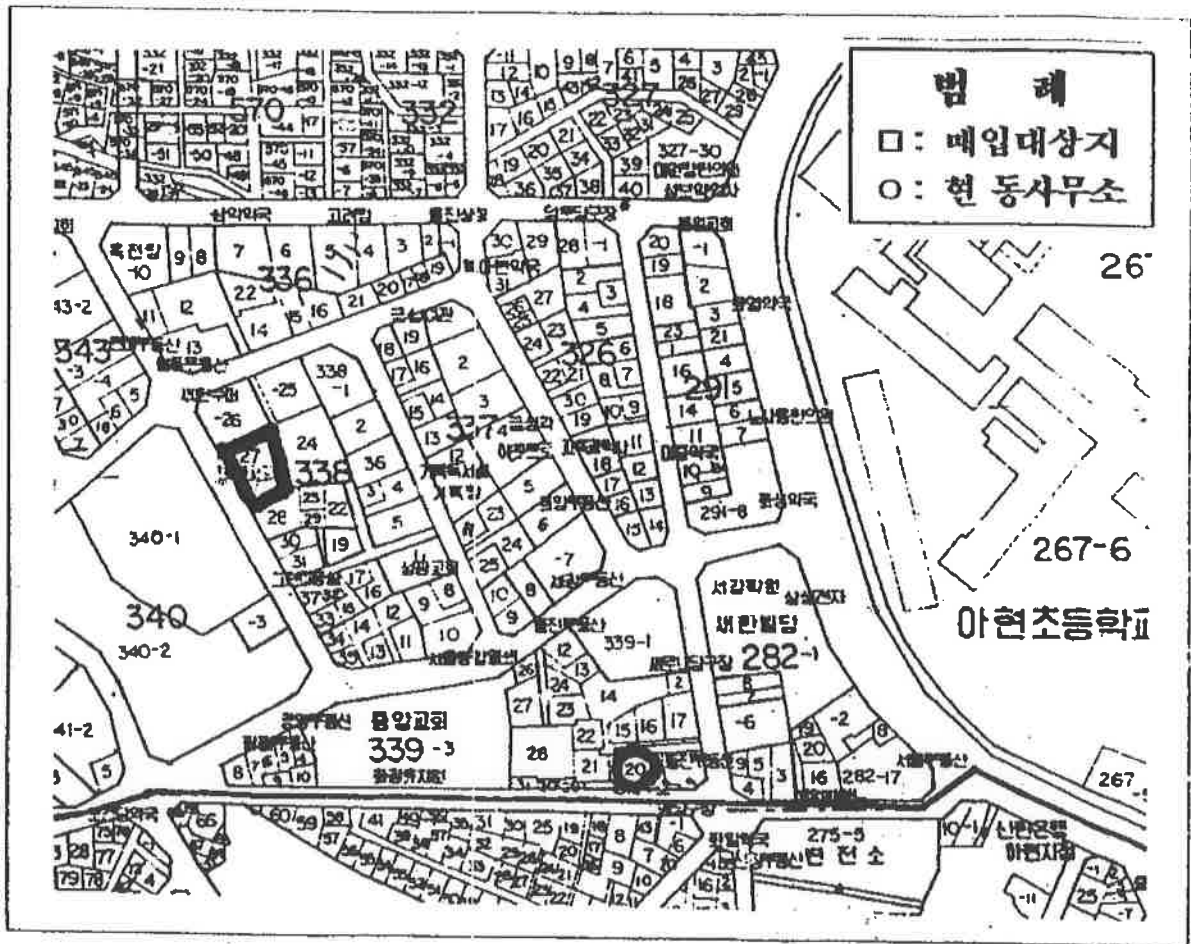
(단위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 정 가 액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주소·성명	비 고
	지 목	소 재 지	수 량					
1	대 지	아현동 338 - 27	320.3	850,000	'97 4/4분기	아현2동 신 청사 부지	서 경 만 (강남구 압구 정동 455번지 현대(A)71동 1005호)	매입
2	건 물	아현동 338 - 27	956.17	750,000	'97 4/4분기	아현2동 신 청사	서 경 만 (강남구 압구 정동 455번지 현대(A)71동 1005호)	매입
3	대 지	연남동 515 - 24 515 - 25	231.7 299.8 (531.5)	1,207,500	'97 4/4분기	연남동 신 청사 건립부지	판 회 자 외 4인 (경기도 고양 시 일산구 마 두동 794번지 강촌마을 805 호 301호)	매입
계	대 지 건 물		862.1 956.17	2,057,500 750,000				
				(합계: 2,807,500)				

취득하려는 재산의 위치도

1. 아현2동 신 청사 및 부지

- 아현동 338-27 대 지 : 330.6㎡
- 건 물 : 철근콘크리트/슬라브
- 층 수 : 지층-1, 지상-5
- 연면적 : 956.17㎡



2. 연남동 신 청사 건립부지

- 연남동 515-24, 대지 231.7㎡
- 515-25, 대지 299.8㎡ 계 531.5㎡



도면번호	6	발급번호	970619-0014-01
장 번호	1-1	처리시각	09 시 25 분 03 초
비 고		작성자	정은하 ㉑

토 지 대 장

고유번호	1144010100-10338-0027
토지소재	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현동
시 번	338-27
축 적	1:600

사 인 (㎡)	토 지 표 시		소 유 권		비 고			
	사	유	주 소	소				
*330.6 (08) 대	(62)1964년 7월 3일 구획경리 완료		강남구압구정동455번대아파트71-1005					
	이 자 여 배		서경만					
등록수정년월일	1986. 8. 1	1989. 1. 1	1990. 1. 1	1991. 1. 1	1992. 1. 1	1993. 1. 1	1994. 1. 1	1995. 1. 1
토지등기부속(중소지권등기부)	수정 203	수정 206	수정 214	수정 220	수정 226	수정 230	수정 234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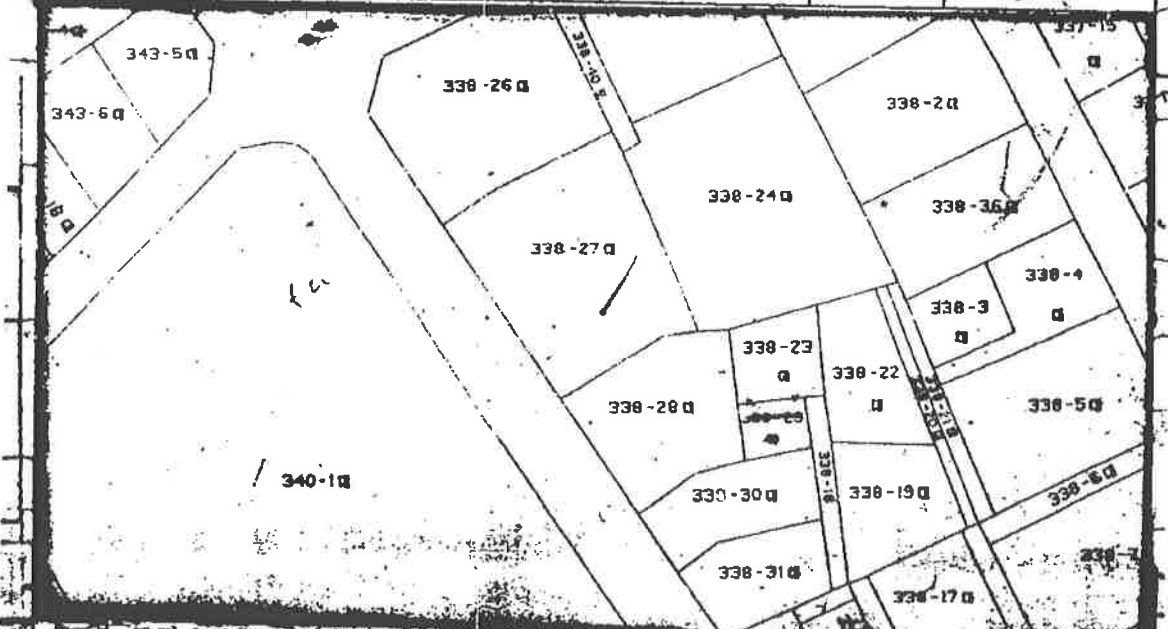


토 지 대 장에 의하여 작성한
 등 본 입니다.
 1997 년 6 월 19 일

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*수입공지가 전부 소인되지 아니한 통분은 그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.

제상항호		토지이용계획확인서		처리기한	1일
대상지	서울특별시	마포구	이현동	번지	338-26
확 인 내 역	① 국토	용도지역	도시	개발계획동의 수립여부	
	② 도	용도지역	(전용·일반·준)주거지역 (중심·일반·근린·유동)상업지역 (전용·일반·준)공업지역 (보전·생산·자연)녹지지역		
	시	용도지구	종회	미관(1,2,3,4,5중), 아파트, 방화, 도시설계, 보도(좌, 우), 기타	
	계	도시계획시설	도로(지속, 결합), 지정계건축선(지속, 결합), 하천, 공원, 시장, 학교, 녹지, 광장, 기타		
	획	도시개발사업	재개발, 주거환경개선지구, 시가지조성, 기타		
	구	역	개발제한구역(내, 지속), 기타		
용	③~⑦	군사시설, 농지, 산림, 자연공원, 수도, 해당없음.			
	⑧	토지거래	허가구역, 전고구역, 해당없음.	축적	500(600, 1200, 3000)
기타				도면호수	호



본 도면으로는 면적측정 및 축척을 할 수 없습니다.

이하의 사항에 대한 취재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구 행정청장

의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		건축물관리대장					비고				
소재지		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38 번지의 27 호									
		면적		승인일자		등록일자					
		262.32		149.62		84.11.26					
구조	근린생활시설	지	1	2	3	4	층	면적	승인일자	소유자주소	주민등록번호
	주택	5	층	면적	149.62	149.62	135.66	84.11.26	북아현동 123의63	성명 또는 상호	성명 또는 상호
구조	주택	109.33	층	면적	956.17	층	면적	승인일자	소유자주소	주민등록번호	
구조	주택	109.33	층	면적	956.17	층	면적	승인일자	소유자주소	주민등록번호	
구조	주택	109.33	층	면적	956.17	층	면적	승인일자	소유자주소	주민등록번호	
구조	주택	109.33	층	면적	956.17	층	면적	승인일자	소유자주소	주민등록번호	

건축물 대장에 의한
등·초본입니다
1997. 6. 19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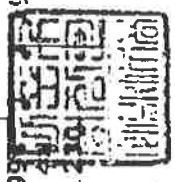
구 조	주 용 도	구 조 명 세 령												주 민 통 록 번 호	성 명 또는 성 호										
		면 적						소 유 자 주 소								민 중 일 자		소 유 자 주 소							
		총	중	중	중	중	중	중	중	중	중	중	중	번 동 사 유	취 리 일 자	소 유 자 주 소									
														94.6.16	94.6.28	강남구 압구정동 455번지 안대야파트 71동 1005호							서 경 만		
무 기 사 립		<p>서기 1997년 06월 1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인로를 지요 공 용 관공서 관리대장설 의취에 작성한 등 시군구별 시정세정비지출내역보고서(94.6.28)의 8.26인원 관공서 지부(94.6.28)의 8.26인원(94.6.28)의 8.26인원(94.6.28)의 8.26인원</p> <p>사무인원명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공서 지부 관공서 지부(94.6.28)의 8.26인원(94.6.28)의 8.26인원(94.6.28)의 8.26인원</p>												구 청											

도면번호	9	발급번호	970619-0013-02
장 번호	1-1	처리시각	09시 23분 02초
비 고		작성자	전순하

토 지 대장

고유번호	1144012400-10515-0024		
토지소재	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		
지 번	515-24	축 척	1:600

지목	면 적(㎡)	토 지 표 시		소 유 권		주 소	
		사	유	소 유	권		
(06) 대	*231.7	(20)1975년 4월15일 분할되어 본번에 -25 읍부합		1996년 3월25일 (03)소유권이전		고양시일산구마두동794 강촌마을805-301 번화자 외4인 이 하 여 백	
등급수정년월일	1986. 8. 1	1989. 1. 1	1990. 1. 1	1991. 1. 1	1992. 1. 1	1993. 1. 1	1995. 1. 1
토지등급(기준수령등급)	수령 201	수령 203	수령 210	수령 216	수령 223	수령 227	수령 232



본 관 임니다.
1997 년 6 월 19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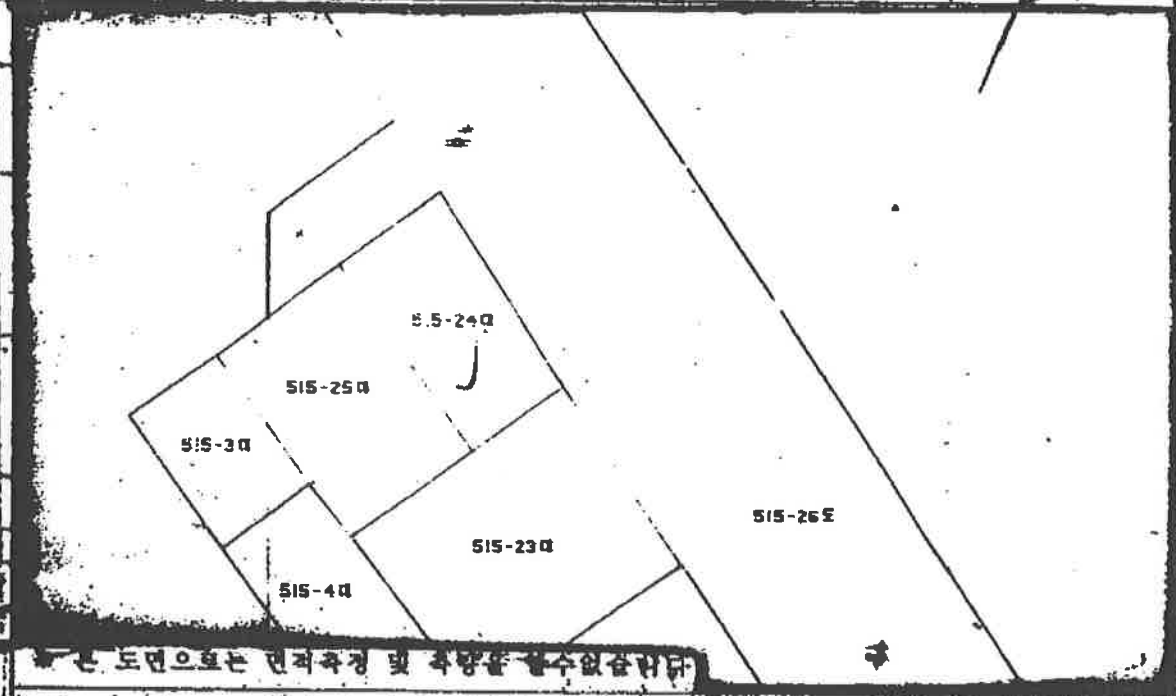
토 지 내장에 의하여 작성한

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*수입증지가 전부 소인되지 아니한 부분은 그 효력을 도유할 수 없습니다.

고유번호		1144012400-10515-0024		공유지연명부		장민호	
토지소재		서울특별시 마포구 신남동		지번		비고	
순번	변동일자	소유권지분	주소	유	사	등	등록
번호	변동일자	인	주소	소	등	성	명
1	1996년 3월 25일 (03)소유권이전	3/11	경기도양주시매곡동794 강연마을805-301		판	호	민
2	1996년 3월 25일 (03)소유권이전	2/11	경기도목동925 북동신시가지아파트702동402호		판	호	민
3	1996년 3월 25일 (03)소유권이전	2/11	경기도대성동310 신아파트17층309호		판	호	민
4	1996년 3월 25일 (03)소유권이전	2/11	경기도신경동312 북동신시가지아파트929층906호		판	호	민
5	1996년 3월 25일 (03)소유권이전	2/11	경기도신경동331 북동신시가지아파트1422층103호		판	호	민
	년 월 일		이	화	여	여	백
	년 월 일						
	년 월 일						
	년 월 일						
	년 월 일						

제출번호		토지이용계획확인서		제라기한	1월
대상지	서울특별시 마포구		동	HJ번지	
특 인 내 역	①국토	용도지역	도시	개발계획등의 수필여부	
	②도	용도지역	(전용·일반·공)	(중상·일반·근린·유동) 상업지역 (전용·일반·공) 공업지역 (보전·생산·자연) 녹지지역	
	시	용도지구	종차	미관(1.2.3.4.5종).아파트.방화.도시설계 고도(최저.최고).기타()	
	계	도시계획시설	도로(지축.점합).지정계건축선(지축.점합).하천.공원.시장.학교.녹지.공장.기타()		
	역	도시개발사업	제개발.주거환경개선지구.시가지조성.기타()		
	구	구역	개발제한구역(내.지축).기타()		
용	도시계획일안사항				
	③~⑦	군사시설.농지.산림.자연공원.수도.해당없음.			
	⑧	모저기대	허가구역.전고구역.해당없음.	폭적	500.600.1200.3000
기타				도면호수	호



본 도면으로는 면적측정 및 축방을 할수없습니다

이하여 신청에 대한 관공의 특필이유를 ()에 의하여 할인합니다

구정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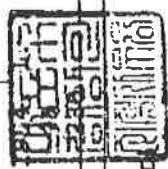
본 도면의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도면번호	9	발급번호	970619-0013-03
장 번호	1-1	처리시각	09 시 23 분 04 초
비 고		작성지	전문화

토 지 대장

고유번호	1144012400-10515-0025		
토지소재	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		
지 번	515-25	축 척	1:600

지목	토 지 표 시		유 권	
	면 적(m ²)	사 유	소 주	소 등 록 번 호
(08) 대	*299.8	(21)1975년 4월15일 515-24 번에서 분할	민 통 일 지	고양시인산구내동794 경춘마을805동301호
			민 통 일 인	
		(03)소유권이전	권자 외4인	
		이 하 여 백	이 하 여 백	
등금수정년월일	1986. 8. 1	1989. 1. 1	1990. 1. 1	1991. 1. 1
토지등기기준(확정통급)	수정 201	수정 203	수정 210	수정 216
				1992. 1. 1
				수정 222
				1993. 1. 1
				수정 226
				1995. 1. 1
				수정 23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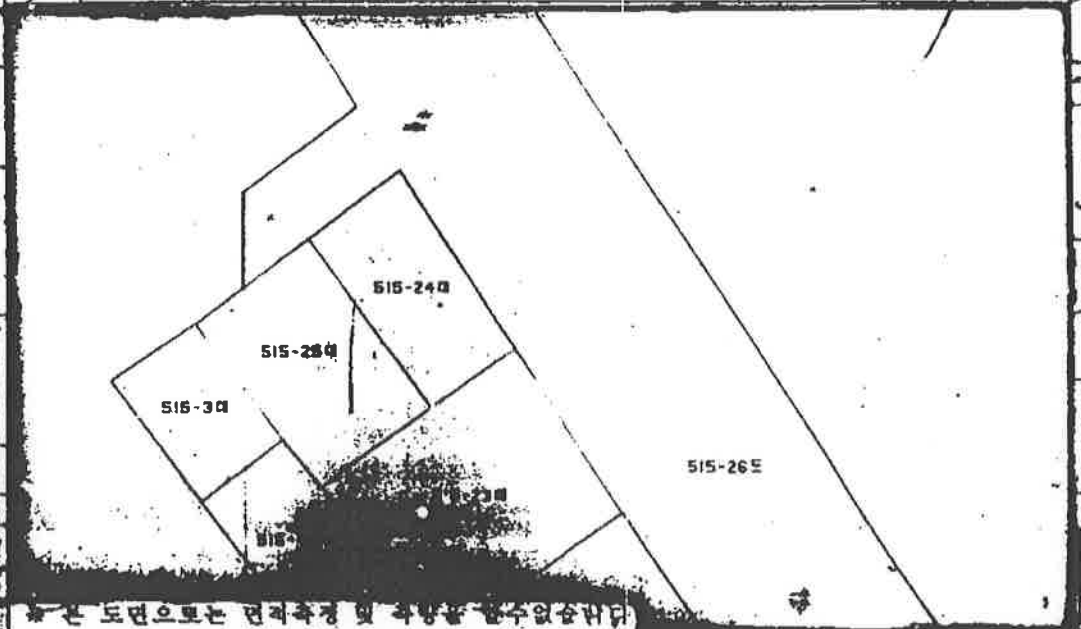
토 지 대장에 의하여 작성한
 등 본 입내
 1997 년 6 월 19 일

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* 수정등지기 상위 소인되지 아니한 통본은 그 효력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.

고유번호		1144012400-10515-0025		공유지연명부		장번호		1	
토지소재		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		지번		515-25		비고	
순번	번호	종류	지분	소유권지분	주소	유	지	등	호
1	1996년 3월 25일 (03)소유권이전	3/25	3/11	고양이말안구마루동794 강촌마을805동301호	원희자				
2	1996년 3월 25일 (03)소유권이전	3/25	2/11	양천구박동925 박동신사거리아파트702동402호	박철자				
3	1996년 3월 25일 (03)소유권이전	3/25	2/11	양천구박동316 신하아파트17동309호	-박영자-				
4	1996년 3월 25일 (03)소유권이전	3/25	2/11	양천구신경동312 박동신사거리아파트929동906호	-박인희-				
5	1996년 3월 25일 (03)소유권이전	3/25	2/11	양천구신경동331 박동신사거리아파트1422동103호	이관희				
	년 월 일								
	년 월 일								
	년 월 일								
	년 월 일								
	년 월 일								

제출번호		토지이용계획학인서		처리기간	1월
대상지		서울특별시 마포구 <u>연동</u> 동 <u>HI</u> 번지 <u>45</u> 호			
특 인 내 역 용 기 타	①국토	용도지역	도시 개발계획동의 수립여부		
	②도	용도지역	(전용, <u>일반</u> , 가) 주거지역 (중심, 일반, 근린, 유휴) 상업지역 (전용, 일반, 순) 공업지역 (보전, 생산, 자연) 녹지지역		
	시	용도지구	종차, 미관(1,2,3,4,5종), 아파트, 방화, 도시설계 고도(최저, 최고), 기타()		
	계	도시계획시설	도로(지속, 점할), 지정계건축선(지속, 점할), 하천, 공원, 시장, 학교, 녹지, 광장, 기타()		
	회	도시개발사업	재개발, 주거환경개선지구, 시가지조성, 기타()		
	구	역	개발제한구역(내, 지속), 기타()		
		도시계획입안사항			
③~⑤	군사시설, 농지, 산림, 자연공원, 수도, 해당없음.				
⑥	토지가격	여가구역, 산고구역, 해당없음.	축적	500, 600, 1200, 3000	
	기타		도면호수	P 호	



본 도면으로는 면적측정 및 측량을 할수없습니다

이해의 사항에 대한 문의는 본청에 문의하시거나, 위계 각기 문의하십시오

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청 (인)

본 도면의 장표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